

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지원신청단체 안내용 사업설명자료

※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주관처 선정 이후에 세부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. 하단의 사업설명자료는 코로나19 확산 경과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업운영방식 및 추진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주관처 선정이후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주관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 관련사항이 안내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목적

- 공연작품 제작비용 중 부담이 큰 대관료 비용을 지원하여 공연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
-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와 공연예술계 활성화 도모
-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예술단체의 피해 경감 대책 시행을 통해 취약해진 공연예술계 창작여건 강화

2. 추진방침

- 국내 공연단체가 국내 소재의 등록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관료 일부 지원
- 총 대관료(부대시설 사용료 포함)의 최대 80%까지 지원 신청 가능
- 동일 공모차수 내, 한 신청인·단체는 1건의 지원신청만 가능 / 1건의 지원신청 내, 복수의 공연작품 대관료 항목 포함 가능
 - [예시] 상반기 공모 지원신청 1건(3개 작품 대관료 항목) / 하반기 공모 지원신청 1건(2개 작품 대관료 항목) → 공모차수별로 1건의 지원신청만 가능
- ※ 단체별 연간 지원금 최대 1,500만원(예산범위 내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)

3.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
- 지원신청자격
 -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(단, 개인 창작발표의 경우 개인도 신청 가능)
 -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
 - ※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은 실연한 민간예술단체(예술인) 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(대행계약서 첨부 필수)
 - ※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,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 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함

※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(문예진흥기금 공통)

-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-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
- 국립·공립(도·시·군립)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
-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
 -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
- 학교 및 소속단체, 초·중·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

-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
-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·개인. 단,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,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-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·개인
- 관계 법령 및 「보조금 운영관리규정」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·개인
- 「예술인복지법」 제6조의2(금지행위 등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·개인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
-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·개인
-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·개인
- 타인(타 단체)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

○ 지원대상(사업)

-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
(공연일정 종료일 기준)

※ 2020년 12월에 진행되는 공연은, 2021년 사업 대상기간에 포함하여 진행 예정

• 공연일정 종료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함

※ 종료일 기준, 지원대상 사업기간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2021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지원가능(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지원신청 시, 결격사항 해당)

예시

① (공연일정) 2019.11.28~2019.12.6 → 2020년 지원신청 가능

* 2019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경우에 지원가능

② (공연일정) 2020.11.28~2020.12.6 → 2020년 지원신청 불가(2021년 지원가능)

- 공연예술분야[연극(창작뮤지컬 포함)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] 대관 공연

※ 창작뮤지컬의 경우, 500석 이하 규모의 창작뮤지컬 공연으로 한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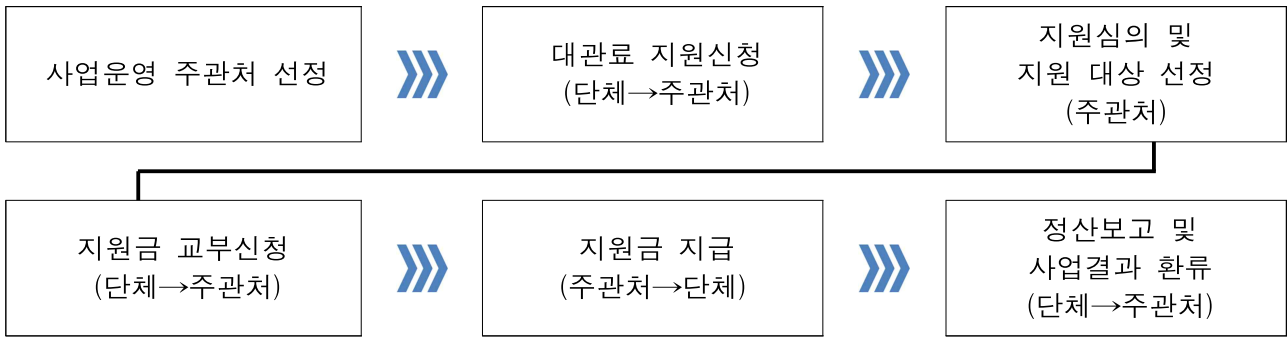
- 공연법상, 등록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

※ 선정사업의 보조금 지급 시, 전자세금계산서(전자계산서) 제출 필수

※ 지원 제외 대상사업

-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
-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
- 상업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공연(해외 라이선스 뮤지컬, 해외 단체 초청 공연 등)
-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
- 문예진흥기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을 지원받는 공연(동일사업(작품)으로 이중 선정 불가)
 - ※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(한국메세나협회 주관)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,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은 지원불가
 - ※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라우드펀딩매칭사업을 지원받는 공연의 경우, 지원신청 가능
- 타 지원 사업(타 기관, 지역문화재단, 지자체 등)을 통하여 대관료 항목을 동일 작품으로 지원받은 경우
- [지원신청 공통 조건]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

○ 사업추진 절차



○ 지원내용

- 순수대관료(준비대관, 공연대관, 철수대관) 및 부대시설사용료 지원
- ※ 부대시설사용료는 대관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함. 단, 연습공간 사용료는 본 사업의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음

○ 지원규모 및 항목

- 총 대관료(부대시설 사용료 포함)의 최대 80%까지 지원 신청 가능(자부담 비율 최소 20%)
- 신청사업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차등 적용
- 단체별 연간 지원금 최대 1,500만원(예산범위 내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)

○ 추진일정

구분	일정
사업운영 주관처 선정	2020. 3월
(별도) 코로나19 대응 별도공모	2020. 4월
-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	2020. 5월 ~
(일반) 상반기 지원사업 공모	2020. 6월
-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	2020. 7월 ~
(일반) 하반기 지원사업 공모	2020. 9월
-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	2020. 10월 ~

※ 주관처 선정일정 및 코로나19 확산 및 소강 상황 등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4. 지원심의

○ 중점 심의방향

- 창작활동 기반 강화 및 공연예술 성과 제고를 위해 우수한 예술성이 인정되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진행하는 공연단체(개인)를 폭넓게 지원하고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함

○ 지원심의 기준

심의기준 (가중치)	세부평가내용
공연작품의 예술성 (40%)	○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? ○ 연출/안무/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? ○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(스태프)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?
공연단체(개인)의 역량 (30%)	○ 공연단체(개인)의 역량은 어떠한가? ○ 사업 운영을 위한 수행능력(조직, 인력 등)을 확보하고 있으며, 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?
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(30%)	○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은 공연예술분야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? ○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(개인)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? ○ 해당 공연장은 공연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?

○ 지원심의 및 평가방식 : 서류심의

5. 2020년 예산 : 2,081백만원

6. 지원신청

○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
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주관처 홈페이지 지원신청 안내문을 통해 지원신청 절차 추후 안내
-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,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 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진행됩니다.

○ 제출서류 및 자료(필수자료 총 5개)

제출자료	구분	제출방법
①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	필수	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 단계에서 '첨부파일' 면에 첨부 · 파일명 :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※ HWP 형식, 지정양식 사용, PDF 변환제출 금지 ※ 지원신청서 내 '확인서' 및 '서약서'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
② 대관계약서	필수	대관료,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기재 필수 · 파일명 :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계약서_단체명 ※ 대행을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행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첨부 ※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, 대관료 변경에 대한 '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' 첨부 ※ 부대시설 사용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, 반드시 관련내역이 증빙되어야 함
③ 공연장 등록증 사본	필수	· 파일명 :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공연장 등록증_단체명
④ 공연장 대관요금표	필수	해당 공연장의 대관 요금표 · 파일명 :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공연장 대관요금표_단체명

⑤ 지원단체 증빙서류 (단체만 해당)	필수	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· 파일명 :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단체증빙서류_단체명
⑥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	선택	포스터, 브로셔, 프로그램북 등 지원신청 공연작품의 진행여부가 확인되는 자료 등 ※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‘첨부파일’ 면에 첨부 / 파 일 개별 업로드 필요(압축파일 업로드 불가) ※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/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심의 참고 자료 로 활용되지 않음(이메일, 우편, 직접 방문 접수 불가)

※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,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

7. 유의사항

- 한 신청인·단체가 동일사업(작품)으로 문예진흥기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이중 신청 불가
 - ※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(한국메세나협회 주관)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,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은 지원불가 /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지 않은 공연은 지원가능
- 한 신청인·단체가 동일사업(작품)으로 타 지원 사업(타 기관, 지역문화재단, 지자체 등)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, 정산 시 대관료에 관한 항목 중복정산 불가 (대관료 자부담 집행에 한해 지원가능)
- 선정사업의 보조금 지급 시, 대관료 항목 전자세금계산서(전자계산서) 제출 필수
- 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(허위/부정 신청 시,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‘0’ 점 처리)
 - ※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,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

8. 문의처
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 061-900-2197 / mirinae1117@arko.or.kr

※ 본 추진일정과 세부 사업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일정과 정책방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변경된 내용은 해당사업의 공모 진행 시 주관처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